

산업통상부공고 제2026-453호

2026년도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7. 1

산업통상부장관

# 2026년도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 요령

## 1. 유공자 포상의 기본 방향

가. 무역의 날 63주년을 맞이하여 수출 확대, 해외시장 개척 등 국가 경제발전에 공헌한 유공자\*에 대하여 정부포상 등을 수여함

\* 당해연도('25. 7. 1 ~ '26. 6. 30)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함

나. 해당 분야 수출에 직·간접적으로 기여한 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등 일반 유공자를 대상으로 수여함

- 수출실적 등에 대한 평가는 수출실적, 수출 증가율, 직 수출비중, 무역수지 개선, 시장개척, 일자리 창출 등을 중점 평가항목으로 함
- 소재·부품·장비 전문기업, 수출유망기업, 세계일류 상품인증기업, 전략물자 자율준수 무역거래자 등 인증기업 및 물류, 방산, 원전, 플랜트 등 전략적 산업 분야의 우수 수출기업을 우대함

다. 금융·마케팅·인증 등 수출 지원을 통해 무역 증대에 기여한 특수유공자 등에 대해 포상함

- 수출 자금 조달 등 금융 지원 및 해외 판로 개척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마케팅 지원 등의 분야에서 기여한 유공자 우대
- 해외투자 진출을 통한 기술 획득 및 신규시장 진입 등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, 수출용 원자재의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 및
- 에너지·자원의 안정적인 공급 등 무역환경 개선과 수출증대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서도 정부포상 실시

라. 일정규모의 수출성과를 달성한 기업에 대해 수출의 탑을 수여함

## 2. 포상의 종류와 대상

### 가.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등

#### (1) 포상 규모('25년 기준)

| 총계  | 정부포상 |    |    |           |            | 장관표창 | 무역<br>협회장<br>표창 |
|-----|------|----|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|
|     | 소계   | 훈장 | 포장 | 대통령<br>표창 | 국무총리<br>표창 |      |                 |
| 678 | 228  | 34 | 31 | 77        | 86         | 370  | 80              |

#### (2) 포상 대상

##### ① 일반유공자

###### ○ 대표자(법인등기상의 수출기업 대표이사)

- 당해연도('25.7.1.~'26.6.30.) 수출이 1백만불 이상인 업체 대표자로서 무역 수공기간\*이 3년 이상인 자

\* 무역 및 관련 수출산업, 업종 경력 기간(전체) 산정

- 공동대표 또는 각자 대표인 경우 1인만 가능
- 업체의 수출액, 수출증가율, 직수출비율, 무역수지개선 등을 심사

###### ○ 임직원

- 당해연도('25.7.1.~'26.6.30.) 수출이 1백만불 이상인 업체에서 근무하고 무역 수공기간\*이 3년 이상이며 소속 업체의 장이 추천한 자
- 사무직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를 구분하여 각 1인 이내
- 소속기업의 평가와 개인 공적 및 수공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

##### ② 특수유공자

- 금융·인증 등 수출지원, 물류·전자상거래·전시 등 무역인프라, 수출 거래·알선·신시장 개척 등 수출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무역 유공자\*

\* 붙임 1. 특수유공자 부문 및 추천기관 현황 참조

- 추천기관 평가 및 피추천인의 무역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
- \* 회비납부 실적, 기부 등 추천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기준으로 포상 추천 대상자를 선정시 정부포상을 취소하고 해당 기관은 추천기관에서 제외
- \*\* 추천기관의 임직원을 선순위·다수 추천시, 추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음

### ③ 기관표창

- 광역자치단체 및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
- \*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당해기간 수출 실적, 전략품목, 수출지원대책 등을 종합심사하고, 수출지원센터의 경우 수출기업화 등 지원실적을 평가

## (2) 포상 요건 및 제외사유

### ① 기본요건

- 수공기간 : 훈장은 15년 이상, 포장은 10년 이상,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함을 원칙으로 함

| 구 분  | 훈 장    | 포 장    |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|
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수공기간 | 15년 이상 | 10년 이상 | 5년 이상          |

### ② 재포상금지

- 정부포상(훈·포장, 표창)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과 관계없이 받은 날로부터 훈장은 7년 이상, 포장은 5년 이상, 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

| 받은<br>정부포상      | 받으려는 정부포상 |    |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| 훈장        | 포장 | 대통령표창<br>국무총리표창 |                      |
| 훈장              | 7년        | 5년 | 3년              | (기간)<br>수여일<br>추천기준일 |
| 포장              | 7년        | 5년 | 3년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대통령표창<br>국무총리표창 | 7년        | 5년 | 3년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
### ③ 포상제한

-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
-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
- 훈·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
- 표창(대통령표창, 국무총리표창)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 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
-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
- \* 다만,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

### ④ 추천제한(결격사유)

-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(기관) 및 형사처분을 받은 자
- 「상훈법」 제8조 및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
- \* 다만,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
-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(단체 및 기관 포함) 및 그 임원
-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기관장)
- 최종 추천일 당시 「국세기본법」, 「관세법」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라 체납 중인 자

○ 사회적 물의 등 유발

-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
※ 추천제한(결격사유)의 세부적인 내용은 「정부포상 업무지침」을 준용하며,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사형,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포상을 취소하고 기 수여한 포상을 환수할 수 있음

## 나. 수출의 탑 및 특별탑

### (1) 수출의 탑

- 최초로 일정규모의 당해연도 수출성과를 달성한 신청기업에 대해 ‘무역의 날’에 수출의 탑 수여
  - 1백만불, 2백만불, 3백만불, 5백만불, 7백만불 달성,
  - 1천만불, 2천만불, 3천만불, 5천만불, 7천만불 달성
  - 1~9억불(매 1억불), 10억불~90억불(매 10억불), 100억불~1,000억불(매 50억불), 1,100억불~(매 100억불) 달성시

### (2) 특별탑

○ 브랜드 탑(3개)

- 농·수산물, 화장품, 의류, 패션, 생활용품, 의료기기 분야 등에서 상품 브랜드를 보유하고, 당해연도 수출 실적 1천만 불 이상인 업체
- \* 기업 규모별 최상위 3개사 선정(대기업, 중견기업, 중소기업)

○ 서비스 탑(9개)

- 당해연도 “서비스 및 전자적무체물 수출” 분야 실적 최상위 3개사를 비롯해, 업종별\* 실적 최상위 또는 차상위 기업 등 총 9개 기업 선정
- \* 문화, 보건, 교육, ICT, 금융, 기술 등

### (3) 공개검증 및 제외 사유

- '수출의 탑 및 특별탑'을 신청한 기업의 업체명 및 공적 개요 등은 무역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검증 등 실시
-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

## 3. 포상신청 및 추천절차

가. 신청기간 : 2026. 7. 20(월) ~ 8. 7(금)

### 나. 신청방법 및 접수처

- 일반유공자 : 무역의 날 사무국 홈페이지(<http://award.kita.net>, 한국무역협회), 온라인 신청

- 특수유공자 : 각 추천기관의 추천을 득한 후, 무역의 날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

- 단체 유공기관 : 무역의 날 사무국(한국무역협회)으로 공문 또는 이메일([posang3@kita.or.kr](mailto:posang3@kita.or.kr))로 신청

\* 신청 양식은, 붙임 2 양식을 참조하되, 기관의 수출지원실적을 자유로이 작성

- 수출의 탑 및 특별탑

- 수출의 탑 및 서비스탑 : 무역의 날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
- 브랜드탑 : 붙임 3의 별지 3호 양식에 따라 신청서 작성 후 무역의 날 사무국 이메일([posang5@kita.or.kr](mailto:posang5@kita.or.kr))로 신청

※ 포상관련 문의처 : 무역의 날 사무국 : 02-6000-2331~6, 카카오톡 문의는 카카오톡 채널 “무역의 날” 검색 후 1:1 채팅